

第2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9.4.27. ~ 4.2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07
II.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09
III.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15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121
2.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	123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3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9
5.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 .....	145
6. 조례심사보고서 .....	147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22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증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객증수

지금부터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4월 27일 (월)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의 관계관이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곽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의사과장 김길흠

의사과장 김길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건 처리 상황, 그리고 이번 회

## [제228회-제1차 본회의]

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4회부터 제2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제2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2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200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기초학력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9건의 사업에서 총 1억

2,15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27일 제2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의장 박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2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 의장 박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하겠습니다.

4월 28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4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

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11시 07분)

#### ● 의장 광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정수 의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주위산만, 대인 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등으로 학교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

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에 한계가 있어 이들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진단-상담-치료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후면 8,400㎡의 부지에 교육·생활관 1동과 다목적실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시설비로 58억 2,439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 최대 인원은 40명으로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받을 기회를 희망하는 도내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학교 적응력이 형성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국민 공통 기본교과 10개 전과목과 대안교육 특성화 교과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228회-제1차 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광정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의장 광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는 진천군 문백면 산3번지에 두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대안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  
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숙직 근무  
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  
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  
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  
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광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충청  
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  
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4분)

● 의장 광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  
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  
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  
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  
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  
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제228회-제1차 본회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 다.

병우 위원님과 성영용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웅,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4월 29일 (수)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감 회의 참석차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광정수 의장님께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 통과 반대를 위한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관계관의 불출석 현황은 전재원 교육국장께서는 2009 맞춤형 학부모 연수 참석차,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께서는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11시 01분)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교육

### ● 의장대리 김부웅

[제228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영용 위원님 외 5인의 위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성영용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5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수정 이유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소재 다른 대안교육 기관과의 명칭이 유사하여 학부모 등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도 명칭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 중 명칭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서수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과 분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망을 통해 진단-상담-치료의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위탁교육 기관인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중장기적인 적절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이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설치근거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8절 제목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제29조 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를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

[제228회-제2차 본회의]

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센터는”을 “청명학생교육원은”으로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소장”을 “원장”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으로 제31조 중 “대안교육센터소장”을 “청명학생교육원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근무 1회당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직근무수당은 당직근무 시 소요되는 실제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 내 일반행정기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대리 김부웅

네, 서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에 대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제228회-제2차 본회의]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우승구,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총무과장 서재문,

재무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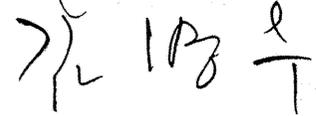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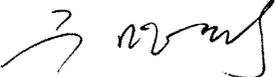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5)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4 .

의 장	곽 정 수	
위 원	김 병 우	
위 원	성 영 용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4. 27. ~ 4. 29.(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4월27일(월)</p> <p>11:00</p> <p>본회의 종료 후</p>	<p><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p> <p>[ 제1차 본회의 ]</p> <p>1.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p> <p>• 회 기 : 2009. 4. 27. ~ 4. 29. (3일간)</p> <p>2.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p> <p>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p>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p>	<p>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4월28일(화)</p> <p>11:00</p>	<p><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p>	<p>본회의휴회</p>
<p>4월29일(수)</p> <p>11:00</p>	<p>[ 제2차 본회의 ]</p> <p>1.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p> <p>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폐 회</p>	<p>의 결</p> <p>의 결</p> <p>의 결</p>



(별첨 2)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28 회)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20일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228-1
----------	-------

제출연월일 : 2009. 4.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
- 소요예산 : 5,824,399천원(시설비)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대상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도내 중학교 재학생
- 교육내용 : 국민공통 기본교과 + 대안교육 특성화교과
- 교육기간 : 1개월 이상 학교적응력이 형성될 때까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 : 붙임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

### 1. 설립 목적

-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중장기적인 적절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
-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 사회의 경쟁력 향상

### 2. 시설 사업 개요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
- 사   업   량 : 교육·생활관 1동, 다목적교실 1동 신축
- 사업기간 : 2009. 5. ~ 2010. 5.
- 총사업비 : 5,824,399천원
- 사업비 산출 내역

구   분	수   요   액(천원)	비   고
교육·생활관	3,389,079	
다   목   적   실	1,212,300	
토            목	900,100	
설계, 감리, 부대비	322,920	
합            계	5,824,399	

### 3. 시설 배치 계획

#### ○ 교육·생활관

층별	면적	실명
지하	180	기계실 150, 계단실 30
1층	481	관리실 90 소집단활동실 60, 도서실 60, 자료실 45 공용공간 80, 현관/계단실 76, 화장실 60, 승강기 10
2층	420	교실 180, 상담실 45, 휴게실 20 계단실 40, 공용공간 80, 화장실 45, 승강기 10
3층	420	사감실 45, 생활실 150, 정보검색실 15 휴게실 20, 대집단 생활실 30, 다용도실 10 공용공간 40, 계단실 40, 화장실/샤워 60, 승강기 10
4층	420	사감실 45, 생활실 150, 정보검색실 15 휴게실 20, 대집단 생활실 30, 다용도실 10 공용공간 40, 계단실 40, 화장실/샤워 60, 승강기 10
5층	307	교사용 숙소 225 공용공간 32, 계단실 40, 승강기 10
옥탑	30	계단실 30
합계	2,258	

#### ○ 다목적실

층별	면적	실명
1층	900	경기장, 무대, 화장실, 샤워실, 소강의실

#### 4.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 교육인원 : 40명 (1학년 10명, 2학년 15명, 3학년 15명)
- 교육대상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도내 중학교 재학생
- 교육내용 : 국민공통 기본교과 (10과목) + 대안교육 특성화교과
- 교육기간 : 1개월 이상 학교적응력이 형성될 때까지

자아의 깨어남을 통한 개인적 성장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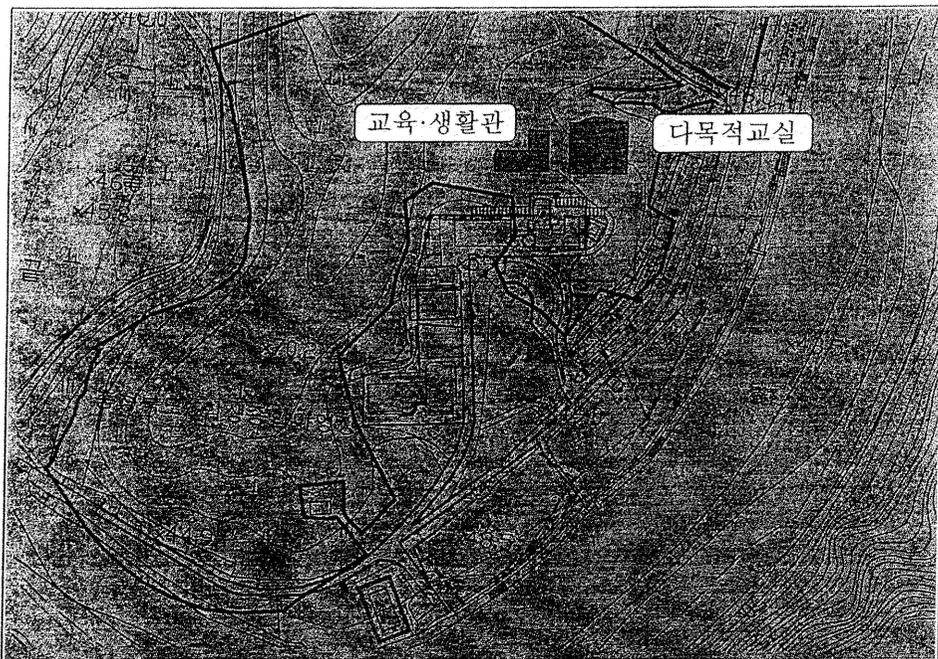
교 육 기	위탁 전 교육기	위탁 후 교육기	
교 육 과 정	준비·적응 교육과정	자아발견 교육과정	
단 계 별 가 치	탐 색	실 천	발 견
삶 의 영 역	한계와 탐색의 시도	성장 가능성 확장	창조와 성취 경험
주 요 활 동	개별 상담 및 집단상담 가족간의 관계 회복 과정 학교·교사와의 레포 형성	인성교육 강화 진로 탐색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진로 체험 강화 자아정체성 확립 복교후 역량 강화
교 과 내 용	심리검사 교과 교과(적응) 수업	국민공통 기본교과 (10과목) 대안교육 특성화교과	

※ 교육과정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5. 대안교육센터 조직(안)

구 분	인원	직 원 현 황
소 장 (교 장)	1	장학관(교육연구관)
교학부	부 장	장학사(교육연구사)
	파견교사	교과 교사(4), 전문상담교사(1)
	계 약 직	임상심리사(1), 전문상담사(3), 청소년지도사(2)
행정실	실 장	행정7급
	기 능 직	조무원
계	15	

## 6. 대안교육센터 건물 신축 위치도



<붙임> 교육과정 세부내용

1. 준비·적응 교육과정 (예비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2주
- 교육 목표
  - 기본 예절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수용
  -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긍정적 사고력 함양
  - 부적응 원인 진단을 통한 본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 위탁 후 본 교육과정 진입에 대한 자발적 선택 기회 제공
- 교육과정 편성 방향
  - 위탁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불규칙한 생활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1주차는 탐색과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며, 2주차는 본 교육과정의 체험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
  - 기존 학생들과 잘 융화되도록 세심하게 배려
- 교육과정 내용

주차	일차	프로그램 내용		
		오 전	오 후	야 간
1주차	1일차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심리검사(MBIT, SCT)	심화상담
	2일차	MMPI 검사	예절교육	심화상담
	3일차	피즐맞추기 / 생애곡선	자아선언문 작성	미술치료
	4일차	자아탐구 / 명상	편지쓰기	미술치료
	5일차	성공 체험프로그램	심리검사 해석 워크숍	미술치료
	6일차	1주 소감 나누기	-	
2주차	1일차	교과수업	배려 세레모니	심화상담
	2일차	교과수업	체력단련 프로그램	미술치료
	3일차	교과수업	칭찬 프로그램	심화상담
	4일차	교과수업	환영 세레모니	음악치료
	5일차	교과수업	준비과정 소감 나누기	음악치료
	6일차	5분연설 및 마무리	-	

## 2. 자아발견 교육과정 (본 교육과정)

### ○ 기본 원칙

-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대안교육교과로 구분한다.
- 보통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과(10개 교과)를 편성 운영하되, 시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대안교육교과는 인성교육활동 및 진로교육활동으로 나누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대안교육교과는 위탁생들이 각자의 희망·진로·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 교육과정 편제(구성)

- 전체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교과는 보통교과와 대안교육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대안교육교과는 프로젝트, 특성화교과로 나누어 편성한다.
- 보통교과는 학년별로 운영하며, 대안교육교과는 학생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여 무학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보통교과 교사는 해당교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대안교육교과는 해당분야 전문강사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 음악과 미술, 기술·가정은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려 악기 연주와 노작활동으로 대치한다.
- 특기적성교육은 과목별로 나누어 최대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작수업은 제과제빵, 도예, 공예, 원예, 요리,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여 학기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업 시수 배정

과 목		국 가 수 준			배 정 시 수			비 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국어	5	4	4	3	2	2	
	도덕	2	2	1	2	2	1	
	사회	3	3	4	2	2	2	
	수학	4	4	3	2	2	2	
	과학	3	4	4	2	2	2	
	기술·가정	2	3	3	0	0	0	대안교과로 대치
	체육	3	3	2	2	2	2	
	음악	2	1	1	0	0	0	대안교과로 대치
	미술	1	1	2	0	0	0	대안교과로 대치
	외국어(영어)	3	3	4	2	2	2	
소 계		28	28	28	15	14	13	
대안 교과	인성				1	1	1	
	집단상담							
	특기적성				2	2	2	음악 대치
	해외문화				3	3	3	
	N I E				2	2	2	
선택 교과	프로젝트학습				4	5	6	
	노작활동				3	3	3	기술·가정 미술 대치
소 계					15	16	17	
재량 활동		4	4	4	3	3	3	
특별 활동		2	2	2	2	2	2	
총 계		34	34	34	35	35	35	

3. 특별 교육과정

○ 기본 원칙

- 문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주요 편성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 자녀 적응 프로그램
- 북한이탈 주민 학생 적응 프로그램
- 교육 소외계층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별첨 3)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28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일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2
----------	-------

제출연월일 : 2009.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3장에 “제8절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신설함

- (1)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29조)
- (2)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 소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안 제30조)
- (3)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31조)

나. 기타

- (1)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관계부서협의 :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09. 4. 3 ~ 4. 23까지,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향후 개정안을 변경해야 할 의견이 접수될 경우 수정 제출 예정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6조로 하고, 제3장에 제8절(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절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제29조(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안교육센터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에 둔다.

제30조(소장) 대안교육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대안교육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 목	내 용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u></p> <p>제29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대안교육센터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에 둔다.</p> <p>제30조(소장) 대안교육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1조(업무) 대안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li> </ol>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u>제29조</u> (생략)	<u>제32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u>제30조</u> (생략)	<u>제33조</u> (현행 제30조와 같음)
<u>제31조</u> (생략)	<u>제34조</u> (현행 제31조와 같음)
<u>제32조</u> (생략)	<u>제35조</u> (현행 제32조와 같음)
<u>제33조</u> (생략)	<u>제36조</u> (현행 제33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28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3
----------	-------

제출연월일 : 2009.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  
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9420호, 2009.2.6)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총무과(총무담당)	
연 락 처	(043) 290 - 2502



(별첨 5)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29일 (제 228 회)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 의 자	성영용 교육위원외 5인
발의연월일	2009년 4월 28일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9. 4. 28.

발의자 : 성영용 교육위원외 5인

### 1. 수정이유

-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센터설립계획안 중 명칭이 도내 소재 대안교육 기관과 유사하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중 명칭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변경 함

### 3. 수정안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명칭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 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변경 함

(별첨 6)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4. 29. 11:00)

##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9년 4월 27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4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4월 28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 가.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제3장에 “제8절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신설함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29조)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에 소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안 제30조)
  -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31조)
- 기타
  -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안 부칙 제2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망을 통해 “진단-상담-치료”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위탁교육 기관인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중장기적인 적절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이탈로 인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는 등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설치근거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
  - 제8절 제목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제29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를”을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로,
  - 같은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센터는”을 “청명학생교육원은”으로,
  -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소장”을 “원장”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제31조 중 “대안교육센터소장”을 “청명학생교육원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5. 수정안 주요 내용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중 설치근거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 골자

- 제8절 제목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제29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를”을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로,
- 같은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센터는”을 “청명학생교육원은”으로,
-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소장”을 “원장”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제31조 중 “대안교육센터소장”을 “청명학생교육원장”으로 수정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9. 4. 29.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중 설치근거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2. 수정사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안 제8절 제목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안 제29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 한다)를”을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로,
- 같은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센터는”을 “청명학생교육원은”으로,
- 안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소장”을 “원장”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으로,
- 안 제31조 중 “대안교육센터소장”을 “청명학생교육원장”으로 수정한다.

### 3.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8절 <u>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u>	제8절 <u>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u>
제29조(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 ..... 충청북도 <u>대안교육센터</u> (이하 “ <u>대안교육센터</u> ”라 한다)를..... ② <u>대안교육센터</u> 는 ..... .....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u>규정에 의하여</u> ..... ..... <u>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u> (이하 “ <u>청명학생교육원</u> ”이라 한다)을..... ② <u>청명학생교육원</u> 은 ..... .....
제30조(소장) <u>대안교육센터</u> 에 <u>소장</u> 을 두며, <u>소장</u> 은 .....	제30조(원장) <u>청명학생교육원</u> 에 <u>원장</u> 을 두며, <u>원장</u> 은 .....
제31조(업무) <u>대안교육센터</u> 소장은..... .....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31조(업무) <u>청명학생교육원</u> 장은..... ..... 1. (생략) 2. (생략) 3. (생략)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9년 4월 27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4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9년 4월 28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 가. 제안이유

-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안 제3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9.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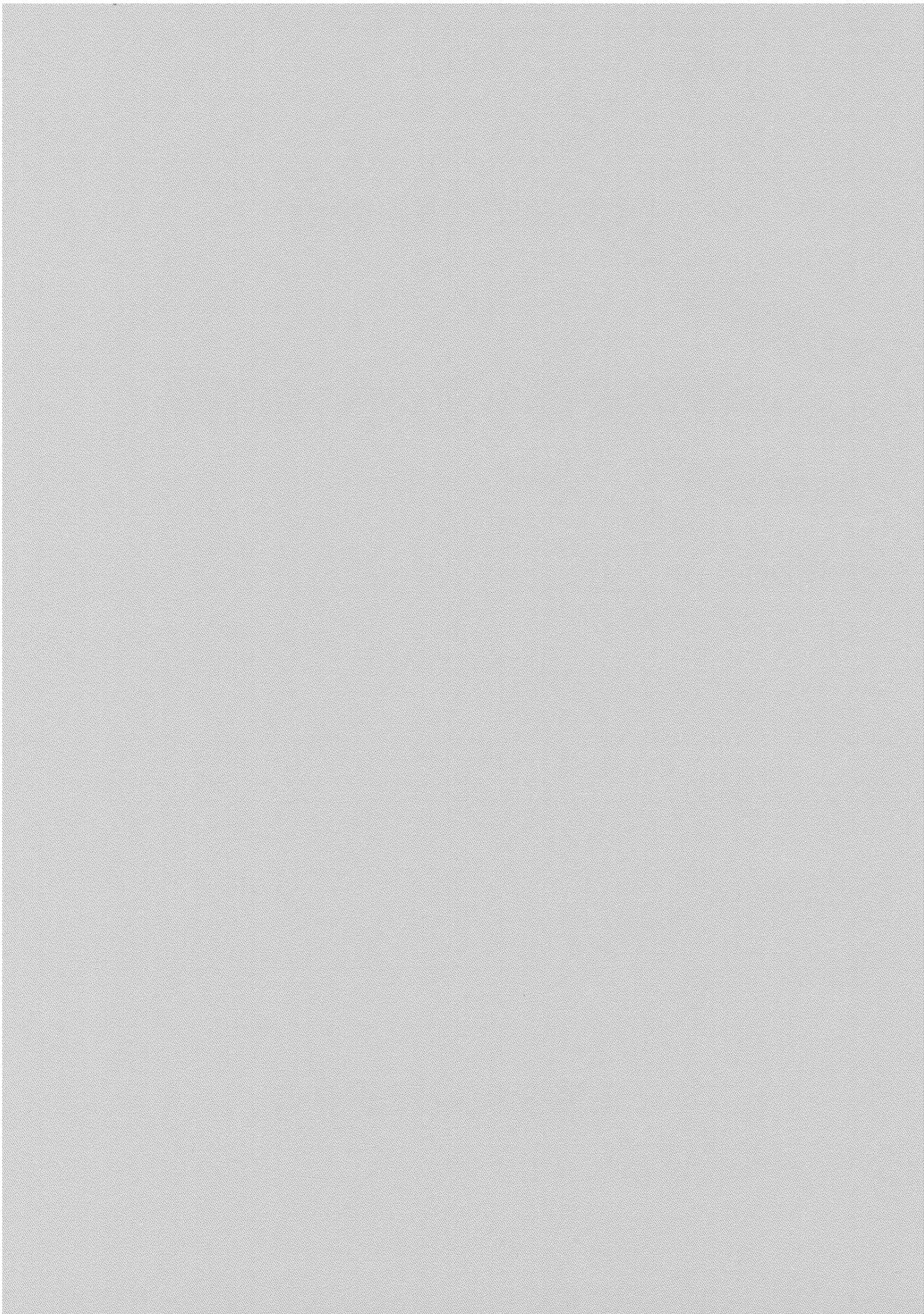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서수웅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	김부웅 김부웅
	김병우 김병우
	성영용 성영용
	정무 정무

第2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59
II.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63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85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年 4월 27일 (월요일) 11시 20분

## 議事日程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0분 개의)

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영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수용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서수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수용**

방금 선출되었음을 명 받은 서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심부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2분)

● **위원장 서수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의 간사로 이상일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수용**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이상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상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간사로 선출된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본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  
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  
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4분)

####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4월 28일 2일간으로 해  
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  
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8  
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  
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8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이상일,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성영웅, 정무.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年 4월 28일 (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2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審査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수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제31조에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보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교육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근거 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에 들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3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31조제3항은 학생징계대상자 즉 교내봉사

나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퇴학 등의 이런 부적응 학생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설립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31조를 근거로 할 것이냐 또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를 근거로 할 것이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를 근거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집행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중등교육과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대안학교는 기관의 설치로서.....

● 김부웅 위원

기관 외의 설치예요?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아니 기관 외가 아니고 기관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 법령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1조제3항하고 제28조 시행령 제54조하고는 차이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는 학교장의 권한인 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은 교육감의 권한인 기관의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등에 관한 규칙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교육을 의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센터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 김부웅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꼭 제31조제3항에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근거한다라고 같이 병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그 의견은 그렇게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제31조제3항을 가지고 기관이 설립이 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하는데는 제28조, 제54조로 우리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크게 부적절하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 제31조제3항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54조까지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대상자를 꼭 한정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아주 대상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뭐냐하면 보호처분 의뢰한 사람, 검찰에서 의뢰한 사람, 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 학교생활 부적응 이런 것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성격의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또는 성적이 아주 나빠서 한다든지 이렇게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병기를 같이 했을 경우에 그럼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것이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이죠.

그래서 이게 명칭이 대안교육센터가 되고 기관을 설치하면 거기에 장을 센터장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 명칭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사석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교도소 같은 데에서 하는 학교도

[제228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대안학교 그래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대안학교 이랬을 경우에 그 명칭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설립목적은 부적응 학생들에게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자기적성과 특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요새 부적응 학생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안센터를 설치하려 하는데 일종의 교육기관이죠.

그러면 아까 김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과학연구원도 세웠고 단재교육연수원도 세웠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도 세웠던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아까 31조 3항 또 32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54조 그 규정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센터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어감이 그래서 우선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집행청 관계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이실직고하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서 명칭에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교육이라고 했던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법에서 되어 있는 그런 통상적인 이름으로만 생각을 했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안교육센터하면 순수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관도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언을 해 주시면 대안교육센터의 명칭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청 관계관들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이 센터의 명칭 및 적용 법령 범위 같은 것을 토론했으면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서수웅

그러면 명칭에 대한 수정동의로 받아들이고요.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 사항에 보면 대안교육센터의 설립경비에 대해서 한번 깊어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교육기관설립을 했는데, 저희 충청북도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국비의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은 별도입니다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오는 특별교부금 그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부웅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성격 예산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부웅 위원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의사타진은 없었던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목적이 정해진 것 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감한테 사전에 협의가 옵니다. 어떠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면 일반 자치단체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자치단체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부웅 위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현재까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바로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도 그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에 이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알리는 취지에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의 위상을 보니까 장학관이 기관장이 되고 부장이 장학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실에 7급이 행정실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런 직급으로 봐서는 이게 직속기관이라고는 해도 이게 참 작은 규모가 되는데, 아이들 숫자는 적다고 해도 교육의 중요한 사항으로 봐서는 교육원의 위상을 한 등급 위로 올려서 정원조례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그런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장학관이 기관장이고 장학사가 부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실장이 7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장학관이 기관장이고 부장은 역시 장학관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보면 서기관 내지 사무관으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요거를 어떻게 7급, 6급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된 이후에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령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직급을 복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 보충질의는 수정동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있었으니까 수정동의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내 소재 대안교육기관과의 명칭이 유사하여 대안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설치근거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절 제목을 “충청북도대안교육센

터”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으로 하고, 안 제29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충청북도 대안교육센터(이하 대안교육센터라고 한다)”를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센터는”을 “청명학생교육원은”으로 하고, 안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소장”을 “원장”으로 “대안교육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으로, 안 제31조 중 “대안교육센터소장”을 “청명학생교육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웅 위원

교육위원 성영웅입니다.

대안학교설립에 대해서 사실 대안학교의 성격을 띠고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적응 학생의 선발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또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선발기준에 대상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여기 가는 걸 또 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또 와서 교육과정 중에 지금 세부 교육과정은 2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간은 또 편성은 1개월 이상 학교적응력이 향상될 때까지 1개월로 했는데, 만일 들어와서 애가 시원찮다고 하면 계속 교육을 시킬 건지 기준이나 이런데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또한 시설면으로 봐도 노작수업을 한다고 지금 3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선발이라든가 여기에 관한 것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작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다 해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목적실 겸해서 10㎡면 한 3명정도 얼마 안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되고 2층, 3층, 4층 다 봐도 그렇고, 노작수업을 어떻게 애들을 갖다 제빵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이걸 어디 요리학원에 갖다 아이들을 시킬 건지 또 강사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굉장

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부적응 학생들이라 해서 애네들이 일상활동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끼리 단합을 이루어서 괜히 어떤 형무소 같은 데 잘못가면 악한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형무소 갔다 와서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범죄도 저지르는 그런 법적인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 잘못 지도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정상적인 아이들로 키워서 사회적응을 시키려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참 고민거리가 많이 되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지도하실 것이며 시설관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중등교육과장 이수철입니다.

성 위원님이 우리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려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모두가 아마 걱정의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교육이 어떤 우리가 경험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

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 분야를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학생들의 대상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을 구분하는데 선정하는데 어떠한 형태를 딱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학생 하나 하나가 모두가 갖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적응 학생들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사항에 보면 부적응에 대한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도저히 지금도 학교에서 단위로 대안학교교실, 친한 친구교실이 금년도부터 한 60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치유하고 아침부터 일과를 진행하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상당히 반복성이 있고 또 전문성의 어떠한 치유가 안돼서 앞으로는 애들을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대안학교인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안학교의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허락을 해 줄 정도의 부모면 그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는 대

부분 가정결손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안 학교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까지 해 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부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도내에는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몇 분은 정말 따뜻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타 도에는 지금 학생들 학생수를 180명, 200명씩 이렇게 정원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인원이 40명이라고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염려하는 것만큼 위험성도 많고 교육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40명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그래도 그런 환경을 상당히 찾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0명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무난히 확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다 끝나게 되면 설치하기

전에 바로 1학기 중에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대안학교의 구성을 하고 시설을 짓기 전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작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설이 다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에 가미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 가지 노작교육도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다 못하는 것은 그런 노작교육을 위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로 1학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염려되는 분야를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성영용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굉장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 원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대안교육센터를 이거를 짓게 되잖아요.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다 했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래 보여요.

먼저 T/F팀이 가동이 되어서 실제 교육과정의 어떠 어떠한 뭐가 노작교육은 어떻게 하고 뭔가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

게 이래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집을 짓게 되면, 이 집의 효용도가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의 건물인지 이 부분도 미심쩍은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짓게 되면 나중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방이 없다 뭐 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옆에다 또 짓나요? 그럼.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대안학교설립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순서 있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 충청북도의 큰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빨리 이것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아마 10월 그때서부터 아마 발체가 되어 가지고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고 지난번도 이 조례가 나오고 예산이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에 문의를 했더니 학교를 설립할 거냐 이런 것에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급기야 계획이

된 거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단기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아니 건물을 일단 지어놓게 되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과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 자체가 다된 상태에서 지금 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상담실하고 대집단 생활실, 휴게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특별한 대안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노작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짜진 상태 내에서 이 계획에 의한 건물이 들어서야지 건물을 해놓고 거기다가 맞추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장학사인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저는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라고 합니다.

이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계획 없이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상담실도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방을 만들 때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럼 방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속소의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 교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필요 시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비와 설계비를 산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교육의 노작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노작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직업교육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노작교육실을 계획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안에 머

무르는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 외에 사실은 이 학생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할 것이거든요 선생님들과, 그래서 교육과정 외의 잠재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수업 이외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교육과정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2주 과정밖에 없는데 1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셨는데요. 2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거기 들어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위탁 전 교육으로 저희들이 2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 학생이 정말로 여기서 생활이 가능한지 변화할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2주 동안 적응과정을 거쳐서 2주 후에 교육을 시작해서 1개월, 2개월 같이 교육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도 1개월 정도 교육을 했더니 이 학생이 충분히 학교에 가서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학교로 원적교로 돌려보내고, 2주 했는데도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해서 학생이 적응할 때까지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복안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성영웅 위원**

좋은 말씀주셨는데 실제 부적응 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또 사고학생들 대개 보게 되면 향후 치료에 관한 부분은 일대일교육입니다. 집체교육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 층별로 따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두려는 거 아니에요. 각 층마다 사감을 두어 가지고 사감 한 사람이 15명, 10명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지금 선생님이 네 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상담사랄지 이렇게 계약제로 해서 여섯 분을 뽑을 계획입니다.

● **성영웅 위원**

여섯 분 뽑아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다 계속 있느냐가 문제예요.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 대 1정도 4를 넘지 않게 선생님 한 분과 학생이 4를 넘지 않게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자면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학

생과 선생님이.

● **성영웅 위원**

24시간 자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구 성원들은 원장님이나 또 부장선생님이나 파견교사 같은 경우는 집에 안가고 애들하고 계속 사나요?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파견교사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24시간 생활을 원칙으로 지금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 **성영웅 위원**

글쎄 원칙으로 하셨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교대로 해 줘야지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지금 현재 양업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자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물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지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이건 누굴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같이 연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정도 있는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주해서 1년 내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 인원이 배정되면 교대로 할 수 있는 일수로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럼 조직한 자체 그것도 명시가 되어서 나와야지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굉장히 애들 이래 되면 모아놓고서 너희들끼리 해서 집단화해 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골치 아픈 애들 단합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범죄예방위원회 그쪽에서 아이들 보게 되면 부모와 범법을 치른 초범 아이들 같은 경우 산행을 시킵니다. 2박3일 정도 그냥 고생되게 부모와 자식간에 마음을 열어놓는 기회를 마련하는 기초작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선생님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아이의 마음을 단혔던 문을 열어 놓으면서 교육이 시작되는 건데 열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와서 2주 동안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 **김부웅 위원**

성영용 위원님 조금 얘기 좀 해볼까요.

● **성영용 위원**

네.

● **김부웅 위원**

지금 인원을 보니까 15명중에서 실제로 아이들 교육에 투여되는 사람이 소장을 빼고 행정실 두 사람 빼고 그러면 12명인데, 12명이 40명을 가지고 지금 설명한대로 24시간 교육한다라하면 굉장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2교대를 해도 6명이 들어가는 건데 6명이 40명을 데리고 하는 거고 이거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 **성영용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물은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다면 4명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도 3교대를 한다라고 해도 18명이 필요한 거예요.

● **교육국장 전재원**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설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외국어연수원 근처에다가 설립하려고 했던 것도 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타 시·도에는 학생들이 센터로 등교하고 학교하는 속식은 집에서 하고 지도 받을 때만 학교로 오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합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봉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공동사용을 전제로 하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학생들의 선도활동이 100%라고는 장담 못합니다만 거의 근접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선에서 지도해야 될 그런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예정된 인원이 40명 정도 맥시멈을 40명으로 잡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용이 교육이 끝나고 순화된 애들은 다시 빠지고 다른 애가 들어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운영상 최고 인원을 40명으로 잡은 것인지 연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 말씀

드리고, 시설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양업고등학교처럼 성공이 된다면 문제학생 그 다음에 지도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중복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타 도에서도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공적인 그런 제도가 정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대상인원을 중복 이외의 학생까지 확대시킬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뭐 안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만, 갔을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부지가 또는 지금에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겸임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까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운영프로그램이나 인력지원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조직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것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의 교과를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 거냐 또 그

다음에 주로 양업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종교단체에 있는 성직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그리로 유입을 하고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성직자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쪽 현장체험학습, 노작학습도 하지만 현장체험학습의 교회도 가고 산사에 가셔도 2박3일 템플스테이처럼 그런 것도 운영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합숙을 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인적자원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좀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갖고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서 이 교육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서수웅

지금 이 문제는 첫 발자국을 띠는 거고 기대가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도 많아서 질의사항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되고 있는 운영에 관한 쪽은 앞으로 점점 시간을 두고 더 많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오늘 조례소위는 사실은 대안교육센터를 우리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는 소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에 같이 올라있는 대안교육센터설립계획안 자체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되어 왔었고 우리 도에서도 근년에 필요성이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 가지고 빨리 어떤 기관을 만들자 센터를 만들자 그러자면 건물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래서 논의가 자칫 너무 조금하게 부실하게 되어 온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격정도 자꾸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주장을 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도 정

말로 아주 충실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대안교육은 10여 년 전쯤 해서 제도교육에 대한 어떤 한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그런 비제도권의 노력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의학의 대체의학을 찾자 하고 또 그쪽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제도교육이나 공교육이 채워내지 못하는 부분을 바깥에서 비제도권에서 채워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대안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에 사실은 그 성과랄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공교육 내에서도 제도교육 내에서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채워낼 수 있는 어떤 보완해 낼 수 있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채워낼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으로 필요성을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면서 그러면서도 채워내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한 일부 실무자나 또는 그 주변의 T/F팀이나 이런 쪽에서만 고민을 하지 말고, 좀더 공청회라든지 이

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그것을 공론에 붙이고 그래서 내용을 좀더 심화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비공식적으로나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또 여러 번 보고회도 듣고 해서 추진사항도 점검을 하면서 많이 살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충북도내에 모든 교육주체들이 이걸 공감을 하고 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후 운영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이 정말 우리 충북교육 발전의 또 하나의 새로운 그야말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득 생각난 것 한 가지만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대안교육센터가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년당 인원을 10명, 15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특별한 그런 어떤 정원으로 못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필요성이 커지기도 할 것 같은데, 특히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특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투여를 하면 성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같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것이 발전하고 확대되면서 분명히 시설이나 시스템을 보완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내에서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같이 검토하시는 사안이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중등교육과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대안 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도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만 했습니다만 요것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아마 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더 운

영에 관한 것은 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조례안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시설배치계획에 학년별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3층하고 4층만 애들 생활실이 있거든요. 그럼 1,2,3학년 따로따로 한다는데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 따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수웅**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을 두 층을 나누었던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두 층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층과 여학생층을 구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과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의뢰할 때 요 부분 꼭 좀 해주세요 했던 것이 교사와 학생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설설계를 의뢰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은 일단 구별을 층을 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제228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학생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현재 이걸 봐서는 교사용 숙소가 5층에 따로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교사용 숙소는 선생님들이 거기서 상주하시고 저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룸의 형태로 숙소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회의 끝난 뒤에 별도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장학사 박창호**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용**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대안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하고 도 더 심한 고위기군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금 대안센터에다가 모아놓고 할 때에 잘못하면 일반학생들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위기군 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학부모한테 지금 우리가 명칭까지 수정발의해서 한 것 마냥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을 사지 않을까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잠깐 직업훈련학교를 기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 성인인데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노숙자, 마약자 또 알코올중독자 어쨌든 사회낙오자들을 발견하면, 그 기술학교로 보내서 그 기술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로 직업적인 자기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회로 다시 내보내서 일을 시키는 직업을 갖게 하는, 아하 이래서 덴마크가 복지국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안센터도 우리 충북의 가장 위기에 몰려있는 학생들을 전부 모아다가 잘 선도하면 우리 충북교육이 복지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갑고 환영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성과가 나지 않을 거다 이게

제일 문제점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도 없고 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대안까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이 염려도 하고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당직수당보다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늘 당직을 기피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니까?

당직수당보다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많다는 얘기.

● 총무과장 서재문

총무과장 서재문입니다.

저희들도 김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직하는 것보다는 4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그 수당이 3만원 이상 넘습니다. 그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제228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4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직수당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 김부웅 위원

따라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이상일,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성영웅, 정무.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홍준기.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9. 4. .

위원장 서수웅 리수웅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9. 4. 27. (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 4. 28. (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